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16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7. 7.
3. 회 부 일: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u>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체육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체육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② <u>체육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u> ③ <u>체육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학교를 지도·감독한다.</u> ⑤ <u>그 밖에 체육영재학교의 설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 영재학교의 현황과 특징

○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¹⁾,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영재학교는 8개교(공립 7개교, 국립 1개교)가 운영되고 있음.

[영재학교 운영 현황²⁾]

No	지역	학교명	설립년도	전환년도	설립유형	비고
1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1991	2003	국립	기존 과학고 전환
2	서울	서울과학고등학교	1989	2009	공립	
3	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1983	2010	공립	
4	대구	대구과학고등학교	1988	2011	공립	
5	대전	대전과학고등학교	1984	2014	공립	
6	광주	광주과학고등학교	1984	2014	공립	신설
7	세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5	2015	공립	
8	인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16	2016	공립	

자료: 교육부(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1) 「영재학교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2년 4월 기준

-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한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일반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비해 학생 선발, 학사 운영,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에서 훨씬 큰 재량권을 가짐.

[영재학교의 주요 특징]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항
선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선발권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있음	법 제5조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 가능	시행령 제14조제3항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시행령 제14조제4항
학사 운영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 실시 가능	법 제11조의3제1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	시행령 제32조제7항
교육 과정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 학칙으로 정함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별도의 교과용 도서 제작 사용 가능	법 제13조제2항
교원 자격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②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음	법 제12조 시행령 제25조제2항

- 현재 「영재교육 진흥법」 외에 별도의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규정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유일하며,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도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나, 아직 그에 따른 영재

학교가 설립되지는 않음.

라. 검토의견

- 현행 제도는 전문적인 체육 교육을 위해 체육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의 체육계 중학교와 16개의 체육계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체육 중·고등학교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서울체육중	서울체육고
부산	부산체육중	부산체육고
대구	대구체육중	대구체육고
인천	-	인천체육고
광주	광주체육중	광주체육고
대전	대전체육중	대전체육고
세종	-	-
경기	경기체육중	경기체육고
강원	강원체육중	강원체육고
충북	충북체육중	충북체육고
충남	-	충남체육고
전북	전북체육중	전북체육고
전남	전남체육중	전남체육고
경북	경북체육중	경북체육고
경남	-	경남체육고
제주	-	제주남녕고
울산	울산스포츠중	울산스포츠고
학교수	12개	16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현행 체육 중·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

- 체육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³⁾된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음.

[체육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제한사항]

- (최저학력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경기대회 참가 제한되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 허용
- (출석인정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제한
 -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청소년 대표/꿈나무 선수는 초과 사용 허용
-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5년부터 전체 고교 전면 적용
 - * 과목 출석률 2/3 이상+학업성취율 40% 이상시 과목 이수 /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 이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요구 수업시수가 적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⁴⁾가 늘어나고 있음.

○ 이상을 고려했을 때, 체육영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체육영재 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① 「초·중등교육법」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4) 학업중단 및 방통고 진학 학생 급증 '19년 115명 →'22년 514명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② 체육 분야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관리를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3월 6일 발표한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인 ‘문화한국 2035’에서도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음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기존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학력제 등 제도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영재학교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학력제, 출석인정일수 등의 제도의 적용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그

5) <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문화 역량 제고” 중 일부 >

4)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① (학생선수 육성) 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및 학교 운동부 지원, 학생선수 육성 모델 다양화 위한 지역 거점형 학교운동부 창단 등 추진

※ 학교운동부 관련 통계

- ▶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 : ('19년) 4,294개교 → ('24년) 3,898개교
-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수 : ('19년) 59,146명 → ('24년) 44,723명

그러나 동 제도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한 바에 따른 정책⁶⁾인바, 이 점을 고려하여 상기 제도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해 규정한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력의 인정, 교원 및 연구원 등 「영재교육 진흥법」 외에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⁷⁾.

○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 중·고등학교의 체육영재학교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 중·고등학교와 체육영재학교는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유사한바, 보다 효율적인 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체육 중·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사례로 기존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운영되던 공립 과학고등학교들도 공립 영재학교로 전환된바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체육영재학교의 설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립 체육영재학교에 대한 규정 미비한 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학교 등과 단절된 운동문화 개선을 위해 최저학력제 도입('07.12.),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을 포함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수업 참여 보장 및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권고('20.6, '20.7)한 바 있음.

7) “[참고자료] 영재학교 유사 입법례” 참조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외에 시·도 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체육영재학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14조의5제4항, 안 제14조의5제5항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체육영재학교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⁸⁾함.

○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교육부는 체육영재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련 법령 간 역할·체계 정합성,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 기존 제도와와의 중복 및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시·도 교육청은 현행 교육부 소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체육을 포함한 영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

8)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신설>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학교를 지도·감독한다. ⑤ 그 밖에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영재학교를 지도·감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련되어 있으며,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서도 체육영재를 육성할 수 있고, 체육 중·고등학교 등 기존의 체육영재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발전적 대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영재학교 관련 유사 입법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한국과학기술원법 (18739)	•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20470)	•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

	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5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

※ 그 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도 유사 조항 존재